일본에서의 법정외세 운용 현황

박 균 조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法定外稅制度』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일본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법정외세 운용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지방세 세원 확대를 위한 실무적 기초 자료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자력발전세 등의 도입이 검토되고 시점에서 참고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일본 地方財務協會가 발간하는 「地方稅」2003년 10월호 「"최근의 법정외세를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前 日本 總務省 企劃課 谷口 謙治」를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시작하는 말

법정외세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지방세법의 개정이 행해졌다.

平成12년(2000년) 4월부터 법정외보통세에 대해서는 종래의 허가제에서 총무대신의 동의를 요하는 협의제로 되고 세원이나 재정수요의 존재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주민의 수익과 부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과세 폭을 확대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법정외목적세의 제도가 창설되었던 것이다.

2000년도 법정외세 상황에 대해서는「지방세」2001년도 4월호에, 2001년도 상황에 대해서는「지방세」2002년도 7월호에 상세하며, 본고에서는 2002년 4월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의 법정외세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2. 最近의 狀況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기 시행중인 법정외세의 상황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기 바라며, 2002년 4월부터 2003년 9월 사이에 총무대신에게 협의가 제출되어 동의가 얻어진 법정외세는 다음과 같다.

⑴ 福岡현 다자이후(太宰府)시, 「歷史와 文化의 環境稅」, 02년 7월, 동의

⑵ 키타큐슈(北九州)市, 「環境未來稅」, 02년 7월, 동의

⑶ 오까야마(岡山)縣, 「産業廢棄物處理稅」, 02년9월, 동의

⑷ 히로시마(廣島)縣, 「産業廢棄物處理稅」, 02년9월, 동의

⑸ 후꾸시마(福島)縣, 「核燃料稅」, 02년9월, 동의

⑹ 이시카와(石川)縣, 「核燃料稅」, 02년9월, 동의

⑺ 돗토리(島取)縣, 「産業廢棄物處分場稅」, 02년9월, 동의

⑻ 기후縣, 「乘鞍環境保全稅」, 03년2월, 동의

⑼ 홋카이(北海)道, 「核燃料稅」, 03년5월, 동의

⑽ 미야자키(宮成)縣, 「核燃料稅」, 03년5월, 동의

⑾ 가고시마縣, 「核燃料稅」, 03년5월, 동의

⑿ 아오모리(靑森)縣, 「産業廢棄物稅」, 03년5월, 동의

⒀ 이와테(岩手)縣, 「産業廢棄物稅」, 03년5월, 동의

⒁ 아끼타(秋田)縣, 「産業廢棄物稅」, 03년5월, 동의

⒂ 시가(滋賀)縣, 「産業廢棄物稅」, 03년 5월, 동의

⒃ 나라(奈良)縣, 「産業廢棄物稅」, 03년 7월, 동의

⒄ 니가타縣 가시와자키(柏埼)市, 「使用濟核燃料稅」, 03년9월, 동의

⒅ 가고시마현 센다이(川內)市, 「使用濟核燃料稅」, 03년9월, 동의

※ 굵은 체는 법정외 목적세이다.

이 중 과세기간의 만료에 수반한 갱신으로 실질 계속안건인 福道縣, 石川縣, 北海道, 宮城縣, 가고시마縣의 「核燃料稅」를 제외한 13건이 신규 세이다.

3. 同意한 法定外稅의 槪要

2002년 4월부터 2003년 9월에 걸쳐 총무대신이 동의한 법정외세 중 실질계속 안건이 아닌 신규 건에 대해 그 개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⑴ 다자이후(太宰府)市, 「歷史와 文化의 環境稅」, 법정외보통세

① 과세의 이유

太宰府市에 있어서는 시의 특징인 수많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綠陰이 풍부한 문화의 마을」에 어울리는 마을 가꾸기의 계획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독자 재원의 충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유료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일정의 세 부담을 요구하는 법정외보통세로서 「歷史와 文化의

環境稅」를 신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

※ 유료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내에 있는 유료 주차장 중 월권주차장, 사업소· 점포 등에 부수하는 주차장, 임시적 주차장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과세표준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대수

④ 납세의무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⑤ 세율

2륜차(자전거를 제외) : 50엔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자동차 : 100엔

승차정원 10명 초과 29명 이하의 자동차 : 300엔

승차정원 29명 초과의 자동차 : 500엔

⑥ 징수방법 등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 유료 주차장의 사업자)

⑦ 예상수입액

65,000천엔

⑧ 과세면제 등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장애자와 개호자 및 장애자에 준하는 자

⑨ 징세비용 예상액

1,245천엔/년

⑩ 과세를 행하는 기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2) 키타큐슈(北九州)市, 「環境未來稅」, 법정외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北九州市에 있어서는 자원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꾀하기 위해 최종 처분장의 안정적 확보나 리사이클, 자원화 기술의 연구 등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環境未來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최종 처분장에서 산업폐기물의 매립 처분

③ 세수의 용도

· 산업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추진

· 폐기물 재이용의 촉진을 돕는 사업의 지원

· 기타 환경을 돕는 시책

④ 과세표준

최종 처분장에서 매립 처분되는 산업폐기물의 중량

⑤ 납세의무자

최종 처분자 및 자가처분 사업자

⑥ 세율

1,000엔/톤

※ 조례 시행 후 3년간은 500엔/톤

⑦ 징수방법 등

신고납부

⑧ 예상수입액

1,500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없음

⑩ 징세비용 예상액

8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조례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3) 오카야마(岡山)縣, 「産業廢棄物處理稅」, 법정외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오카야마현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노리고,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화, 재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를 촉진하는 시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産業廢棄物處理稅」를 창설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과세객체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 반입

③ 세수의 용도

- 산업 폐기물대책 추진비용
- 보건소 설치市에 대한 교부금

과세표준

최종 처분장에 매립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중량

⑤ 납세의무자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 및 중간처리 업자

⑥징수방법 등

특별징수

※ 自社에서 최종처분을 행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⑦ 세율

1,000엔/톤

⑧ 예상수입액

700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없음

⑩ 징세비용 예상액

35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조례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⑷ 히로시마(廣島)縣, 「産業廢棄物埋立稅」, 법정외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히로시마현에 있어서는 증가 경향에 있는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을 억제함과 동시에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시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産業廢棄物埋立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 반입

③ 세수의 용도

산업 폐기물의 배출억제, 감량화, 리사이클 기타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시책

④ 과세표준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중량

⑤ 납세의무자

최종 처분장에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는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

⑥ 징수방법 등

특별징수

※ 타자로부터 반입된 산업폐기물을 중간처리 한 후에 자사의 최종 처분장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⑦ 세율

1,000엔/톤

⑧ 예상수입액

938.1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자사의 최종 처분장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 과세면제

⑩ 징세비용 예상액
33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5년

(5) 돗토리(島取)縣, 「産業廢棄物處分場稅」, 법정외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돗토리현에 있어서는 2000년도부터 현민, 사업자, 행정이 일체로 되어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향한 시도를 행하고 있다. 특히 2001년도부터는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島取縣産業廢棄物處理計劃」을 책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리사이클의 추진」 「적정처리」를 순환형 사회 구축의 주된 것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각종 시책의 추진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産業廢棄物處分場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의 반입
③ 세수의 용도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촉진에 관한 시책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생 기타 적정한 처리에 관한 시책
④ 과세표준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중량
⑤ 납세의무자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
⑥ 징수방법 등
특별징수
※ 타자로부터 반입된 산업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자사의 최종 처분장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⑦ 세율
1,000엔/톤
⑧ 예상수입액
700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생기는 폐기물과 성격이 다른 폐기물(예; 하수처리 등에 수반하는 汚泥 등)
・자사의 최종 처분장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과세대상 외
⑩ 징세비용 예상액
289천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조례 시행 후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6) 기후현縣, 「乘鞍環境保全稅」, 법정외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기후현에 있어서는 乘鞍 스카이라인의 무료화 및 마이카 규제를 계기로 하여 관광객에 환경교육 등 새로운 자연환경 보전시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외 목적세로서 「乘鞍環境保全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乘鞍 鶴池주차장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스스로 들어가는 행위,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행위
③ 세수의 용도

乘鞍지역의 환경보전 시책

④ 과세표준

乘鞍 鶴池주차장에 자동차로 진입하는 회수

⑤ 납세의무자

乘鞍 鶴池주차장에 들어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셔틀버스, 노선버스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⑥ 징수방법 등

특별징수・신고납부

※ 셔틀버스, 노선버스 등에 대해서는 월마다 신고납부 방법에 의함

⑦ 세율

- 승차 증원이 30인 이상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일반 승합용버스 이외(관광버스등); 1회당 3,000엔
  - 일반 승합버스(셔틀버스, 노선버스 등); 1회당 2,000엔
- 승차 증원이 11인 이상 29인 이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마이크로 버스 등); 1회당 1,500엔
- 승차 증원이 10인 이하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택시 등); 1회당 300엔

⑧ 예상수입액

30.3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⑩ 징세비용 예상액

0.8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시행 후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⑺ 아오모리(青森)縣, 「産業廢棄物稅」, 법정외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아오모리현에 있어서는 지속적 발전가능이 가능한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향해 산업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감량화, 재생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의 촉진에 관한 시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産業廢棄物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의 반입

③ 세수의 용도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그 감량화, 재생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의 촉진에 관한 시책에 요하는 비용

④ 과세표준

최종 처분장에의 반입에 관계하는 산업폐기물의 중량

⑤ 납세의무자

- 최종처분업자에게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탁한 자
- 스스로 그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을 행하는 자

⑥ 징수방법 등

특별징수・신고납부(특별징수의무자; 최종처분업자)

※ 자사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설치하는 최종 처분장에 반입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⑦ 세율

1,000엔/톤

⑧ 예상수입액

60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縣이 공급하는 공업용수 중 하천의 表流水를 원수에 의해 공급하고 있는 것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자사 처리하는 것

⑩ 징세비용 예상액

1.3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⑻ 이와테(岩手)縣, 「産業廢棄物稅」, 법정외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이와테현에 있어서는 순환형 지역사회의 형성을 향해 계속 증가하는 산업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産業廢棄物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의 반입

③ 세수의 용도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의 촉진에 관한 시책에 요하는 비용

④ 과세표준

산업폐기물의 중량

⑤ 납세의무자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최종 처분장에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⑥ 징수방법 등

특별징수・신고납부(특별징수의무자; 최종처분업자)

※ 자사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설치하는 최종 처분장에 반입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⑦ 세율

1,000엔/톤

⑧ 예상수입액

307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없음

⑩ 징세비용 예상액

20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⑼ 아키타(秋田)縣, 「産業廢棄物稅」, 법정외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아키타현에 있어서는 「환경에의 부담이 적은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내걸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화, 재생이용, 기타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촉진에 관한 시책 등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産業廢棄物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의 반입

③ 세수의 용도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화 및 재생이용, 기타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촉진에 관한 비용

④ 과세표준

산업폐기물의 중량

⑤ 납세의무자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최종 처분장에 산업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⑥ 징수방법 등
특별징수・신고납부(특별징수의무자; 최종처분업자)
※ 자사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설치하는 최종 처분장에 반입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⑦ 세율
1,000엔/톤
(공유수면 매립구역 내에 현이 설치하는 최종 처분장에의 지정 부산물의 반입에 대해서는 250엔/톤)
⑧ 예상수입액
323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없음
⑩ 징세비용 예상액
21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⑽ 시가(滋賀)縣, 「産業廢棄物稅」, 법정외 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시가현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생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에 관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産業廢棄物稅」를 실시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중간 처리시설 도는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 폐기물의 반입
③ 세수의 용도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에 관계하는 시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함
④ 과세표준
산업폐기물의 반입 중량
⑤ 납세의무자
배출사업자(현외의 중간처리업자를 포함)
⑥ 징수방법 등
신고납부
⑦ 세율
1,000엔/톤
⑧ 예상수입액
98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배출사업자 스스로에 의한 중간처리
・이중부담조정에 관한 반입
・재생시설에의 반입(면세점; 연간 500톤 이하의 반입)
⑩ 징세비용 예상액
30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⑾ 나라(奈良)縣, 「産業廢棄物稅」, 법정외 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나라현에 있어서는 경제적 수법으로서 「산업폐기물세」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산업폐기

물의 배출억제, 재생이용, 감량시책 등의 추진을 한층 꾀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② 과세객체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 폐기물의 반입

③ 세수의 용도

산업폐기물의 배출억제 및 재생이용, 감량, 기타 적정한 처리에 관계하는 시책에 요하는 비용

④ 과세표준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반입 중량

⑤ 납세의무자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

⑥ 징수방법 등

특별징수 (자사처분의 경우는 신고납부)

⑦ 세율

1,000엔/톤

⑧ 예상수입액

106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없음

⑩ 징세비용 예상액

12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⑿ 가시와자키(柏崎)市, 「使用濟核燃料稅, 법정외목적세

① 과세의 이유

니기타현 柏崎 지역은 합계 7기의 원자로가 입지해 있고 1985년이래 17년간에 걸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다. 발전소 사이트 내에 저장된 사용해 버린 핵연료는 운전의 계속과 함께 늘어나 있고 작금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제정세를 받아 방제체제의 정비 등을 향한 시민의 요청은 일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고정자산세는 최근 대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시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재원확보는 금후 곤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것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안전체제, 방재대책의 충실을 꾀함과 동시에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공생해 가는 것으로 되는 지역의 새로운 진흥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으로서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법정외 목적세로서 「使用濟核燃料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보관

③ 세수의 용도

원자력 발전소 소재市로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대책, 생업안정대책, 환경안전대책, 민생안정대책 및 원자력발전소와의 공생에 필요한 경비

④ 과세표준

보관하는데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중량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중량은 사용해 버린 핵연료에 관한 원자핵분열을 시키기 전의 핵연료 물질의 중량으로 한다)

⑤ 납세의무자

원자로 설치자

⑥ 징수방법 등
신고납부
⑦ 세율
480엔/kg
⑧ 예상수입액
541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없음
⑩ 징세비용 예상액
없음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⒀ 가고시마縣 센다이(川內)市, 「使用濟核燃料稅」, 법정외보통세
① 과세의 이유
가고시마현 센다이市에 있어서는 현재 원자력에서 2기의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지만,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사이트 내 일시 저장이 장기화하고 있다.
한편, 작금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제정세를 받아 안전대책, 민생안정대책 및 생업안정대책에 덧붙여 환경대책이나 지역 이미지 향상이라는 새로운 시점에 선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력발전소와의 공생을 기본으로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외 보통세로서 「使用濟核燃料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② 과세객체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저장
③ 과세표준
저장되고 있는 사용해 버린 핵연료(사용해 버린 연료 집합체)의 중량(1원자로 당 157體를 초과하는 분)
④ 납세의무자
원자로 설치자
⑤ 징수방법 등
신고납부
⑥ 세율
1체당 23만엔
⑦ 예상수입액
252백만엔
⑧ 과세면제 등
없음
⑨ 징세비용 예상액
없음
⑩ 과세를 행하는 기간
2004년도부터 2008년 까지의 5년간

4. 끝내면서(금후의 법정외세의 동향에 대하여)

2002년 4월 이후 총무대신이 동의한 법정외세 중 실질 계속 심의안건이 아닌 신규 13건 중 11건이 목적세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정외 목적세가 활용되고 있는 배경의 하나로는 법정외 목적세가 특정의 세원에 대하여 세수의 용도가 한정되는 것에서 부담과 수익의 관계가 명확화 되기 쉽고,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쉽게 된다고 하는 것이 들어지지만 더욱이 환경대책 등으로 지방이 독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정외 목적세가 경제적 수법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면, 최근 각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세는 그 좋은 예이다.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시책의 충실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의 정책수법과 조합시켜 산업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정외 목적세로서 산업폐기물세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금후도 각지에서의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신설된 법정외세나 현재 각지에서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법정외세를 보면, 주요한 세원은 이미 법정세목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견하기 위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짤까가 관건으로 된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주된 납세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區域 外의 者로 되어 있기도 하고 특정의 자, 특히 법인에 한정하여 과세하기도 하는 세를 발견할 수 있다.

지방이 법정외세를 비롯한 과세자주권을 활용하고 자주재원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는 공평·중립 등 稅 原則에 비춘 충분한 검토가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과 정면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납세자가 한정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납세자에의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청취 등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위한 강한 집착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주요한 세원은 이미 법정세목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행의 틀에서 법정외세의 활용에 의한 지방세원의 충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확실한 것이고 금후는 이것을 다시 활용하기 쉽게 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제도로 되도록 검토를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既 施行中인 法定外稅의 運用狀況

1. 道府縣 法定外普通稅

가. 石油價格調整稅

衷繩현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휘발유의 판매에 대하여 과세한다. 휘발유 정제업자, 수입업자에게 과세하며 세율은 1,500엔/㎘이다.

나. 核燃料稅

福井현, 福島현, 愛媛현, 左賀현, 島根현, 靜岡현, 가고시마현, 新潟현, 北海道, 石川현 등 11개 부현에서 과세하고 있다. 발전용 원자로에의 핵연료 주입에 대하여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발전용 원자로에 주입한 핵연료의 가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발전용 원자로의 설치자 이며 세율은 100분의 7에서 10까지 다양하다(福島현은 重量割로 1㎏당 6,000엔을 적용하고 있다)

다. 核燃料等取扱税

茨城현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원자로에의 핵연료의 주입,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등 4가지에 과세하며 원자로 설치자, 재처리 사업자등이 납세의무자로 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핵 연료가액의 100분의7 등이다.

라. 核燃料等物質取扱税

青森현에서 우라늄위 농축이나 폐기물의 매설 등에 과세하며, 우라늄의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폐기물 매설사업자 등이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객체에 따라 세율은 달리 적용하고 있다.

마. 臨時特別企業税

神奈川현에서 법인의 사업활동에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소득의 계산상 이월 결산금과 상쇄되는 당기순이익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당기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세율은 3%(특별법인은 2%)를 적용한다.

2. 市町村 法定外普通税

가. 砂利採取税

神奈川현 중정정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砂利의 채취에 대하여 채취량에 따라 채취업자에게 과세한다. 洗淨한 사리 1㎥에 30엔을 과세하고 잇다.

나. 砂利採取税

신내천현 산북정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사리 및 암석에 대하여 과세한다. 세율은 사리는 1㎥당 15엔이며, 암석은 10엔을 적용하고 있다.

다. 山砂利採取税

京都府 城陽市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1㎥당 세율은 40엔이다.

라. 別荘等所有税

静岡현 熱海市에서 별장 등의 소유를 과세 대상으로 별장 등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1㎡당 년 650엔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3. 道府縣 法定外目的税

가. 産業廢棄物税

三重현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과세표준 과세객체, 세율 등은 다른 현과 비슷하다.

나. 宿泊税

東京都가 과세하고 있으며, 호텔또는 여관에의 숙박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호텔 또는 여관에의 숙박일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세율은 1인 1박에 대하여 숙박요금에 따라 다르며, 10천엔 이상 15천엔 미만은 200엔이고 15천엔 이상은 200엔을 적용한다.

4. 市町村 法定外目的稅

가. 柳漁稅

山梨현의 河口湖町, 勝山村, 足和田村 등의 3개 정촌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河口湖에서의 柳漁행위에 대하여 유어 행위를 행하는 자에게 1인당 1일 200엔을 징수한다.

나. 一般廢棄物埋立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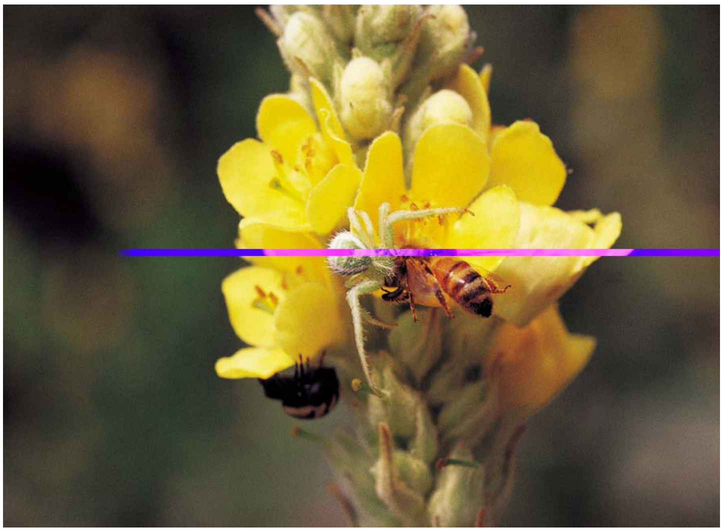
岐후현 多治見市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多治見 시내의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에 매립을 목적으로 시외로부터 갖고 들어오는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그 중량에 따라 과세한다. 세율은 전년도의 매립량이 10만 톤 이하인 경우는 톤당 500엔, 10만 톤을 초과한 때에는 톤당 750엔을 과한다.